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6호 2021. 10. 18.(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10호)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4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예 천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최소 면적 지정(안 제13조)

-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에 지정 가능

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 존치기간을 3년 이하로 지정

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추가(안 제26조)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50미터 미만의 진입도로 개설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준용

마.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대상 추가(안 제58조)

-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연료공급 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 적용

바. 농산물가공처리시설·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안 제59조의2)

- 연접한 시군까지 확대 적용

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안 별표 22)

-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허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도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346, 팩스 : 054-650-6349
- 전자우편 : ugongisan@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동안 군청,”을 “동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을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은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

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9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우리 군”을 “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을 “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으로 한다.

제68조제6항제1호 중 “제113조제1항”을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 중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을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 중 “자목”을 “자목, 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아목·자목”을 “아목·자목·너목”으로 한다.

별표 24 단서 중 “10호”를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100미터”를 “직선거리가 10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u>동안</u> 군청,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 ----- ----- ----- ----- ----- <u>동안</u> ----- ----- ----- ----- -----.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u>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u>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생략)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

<신 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하로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 대상은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 -----
-----.

1. ----- 「주택법」 제15조-----

2. ----- 「주택법」 제15조-----

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3.·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6. (생 략)

<신 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
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
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
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
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
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
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10. (현행 제6호와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
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신 설>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② (생략)

<신 설>

-----.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

③ (생략)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
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
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
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
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
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
은 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
재

3. (생략)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
폐율의 완화) ①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
가등록문화재

3.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u>우리 군</u>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생략)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u>군</u>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 ⑤ (생략) 제68조(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생략)	1. ----- ----- -----<u>군 또는 군과 연결한 시군</u>----- ----- ----- 2. (현행과 같음) 3. ----- ----- -----<u>군 또는 군과 연결한 시군</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u>제113조의3제1항</u> ----- ----- <삭제> ⑦ (현행과 같음)
--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
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
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
8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
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호수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③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 상수도 ·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예천군 지역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기능(안 제4조)

-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관리 지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 관련 행정사항
-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5조 ~ 제13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 지원 등 결정

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안 제14조)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 가공시설 운영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 상황, 생산·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점검할 수 있음

라. 가공시설의 사용(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1개월 전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수익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함
-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인 경우 매회 담당공무원에게 가공시설(장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공시설(장비) 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 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마. 공동브랜드의 사용(안 제24조)

-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 신청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 예천군농업기술센터
- 전화 : 054-650-6451, 팩스 : 054-654-6577
- 전자우편 : parkjungho9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
2. 위치 : 예천읍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이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초반, 심화반, 마스터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교육생”이란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3.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관리 지원
4.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 사용
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한 행정사항
6.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 대표 등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2.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과금 납부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척

된다.

②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제1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부서, 담당공무원, 운영요원 등을 포함한 가공시설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상황, 제품 생산·판매,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에게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사용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8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 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수료한 농업인

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이라도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매회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실비 범위 안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승인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은 시제품 개발,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가공시설의 사용기간 중이나 사용 완료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기간) ①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받은 농업인은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25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7. 관계 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 ①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이 가공시설(장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공시설(장비) 사용료는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가공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이 시제품 개발 및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제품의 반출제한)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과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브랜드)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생산제품의 품질기준 및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2.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의 주원료가 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25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2. 제품의 제조과정 중 식품위해요소,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질 것
3. 가공시설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작업할 것
4.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를 분실하거나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할 것
5.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6. 사용·수익 허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 것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 신청인

협동조합·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구 조	철골구조, 제조업소
건물면적	m ²

3. 사용기간

20 . . . ~ 20 . . .

4. 사용목적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용료

예천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

예천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

위와 같이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주 소 :

- 붙임 1. 신청인 신분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증

허가번호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		
1. 신 청 인			
협동조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구 조	철골구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	20 . . . ~ 20 . . .		
4. 사용목적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 신청서

1. 신청인

업체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명		연락처	
주 소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이수	(년)농산물가공창업(마스터반) 교육		

2. 신청내용

사용내용	사용목적					판매용()/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제품명		품목제조보고번호			주원료명		원료사용량(kg)		
사용 시설/장비										
작업참여자										
장비사용 희망기간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1. 작업참여자 건강검진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끝.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5.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시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6.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예천군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수하여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할 경우 가공시설 사용 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 허가증

허가번호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자	
사용목적	판매용()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시간)
사용료	
특이사항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뒷면)과 같이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허 가 조 건

1.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다.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 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 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바.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사 유 :

- 붙임 1.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 현황 1부.
2.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